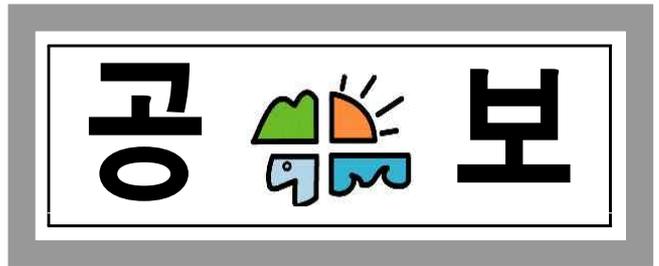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36-1호 2012년 11월 27일(화)

## 공 고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2005년 이후 7년간 하수도사용료의 동결로 요금 현실화율이 14.86% (인상요인 572.99%)에 불과함에 따라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현행 사용료 대비 평균 9%를 일률적으로 인상토록 결정, 이를 반영하여 공기업으로써의 독립채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을 도모함은 물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6조제1항)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 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토록 함.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함.

나.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속초시 수도급수조례」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토록 함 (안 제21조제1항)

다.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그 외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함. (안 제26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그 외 조문형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마.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별표 2)

구 분  업 종	사 용 요 금 (현 행)		사 용 요 금 (개 정)	
	사 용 량(톤)	금 액(원)	사 용 량(톤)	금 액(원)
가 정 용	1 - 10	<u>210</u>	1 - 10	<u>230</u>
	11 - 20	<u>240</u>	11 - 20	<u>260</u>
	21 - 30	<u>270</u>	21 - 30	<u>290</u>
	31 - 40	<u>300</u>	31 - 40	<u>330</u>
	41 - 50	<u>330</u>	41 - 50	<u>360</u>
	51 이상	<u>360</u>	51 이상	<u>390</u>
일 반 용	1 - 30	<u>260</u>	1 - 30	<u>280</u>
	31 - 50	<u>300</u>	31 - 50	<u>330</u>
	51 - 100	<u>360</u>	51 - 100	<u>390</u>
	101 - 300	<u>440</u>	101 - 300	<u>480</u>
	301 - 500	<u>550</u>	301 - 500	<u>600</u>
	501 이상	<u>660</u>	501 이상	<u>720</u>
대중탕용	1 - 200	<u>240</u>	1 - 200	<u>260</u>
	201 - 300	<u>260</u>	201 - 300	<u>280</u>
	301 - 500	<u>300</u>	301 - 500	<u>330</u>
	501 이상	<u>340</u>	501 이상	<u>370</u>
산 업 용	단일요금	<u>300</u>	단일요금	<u>330</u>

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5)

○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		처 리		계	
ℓ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u>10</u>	<u>11.5</u>	<u>2</u>	<u>2.3</u>	<u>12</u>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		처 리		계	
ℓ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u>13</u>	<u>15</u>	<u>2</u>	<u>2.3</u>	<u>15</u>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하수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1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대포동 542)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전화: 033-639-2931, FAX: 033-639-2497

E-mail: yjw517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전화번호 : 033-639-29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배수설비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통합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통합고지에 따른 부과와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 시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여 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처리수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처리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계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계측장치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算定)기준과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算定)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 공급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나.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공급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공급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算定)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공급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세제공급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공급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공급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에 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 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한 차례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납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사업소 이용자가 사업소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보호 1종 대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하수도사용량 10세제곱미터의 사용료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

사용료의 5분의 2를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로서,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 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제22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한 것도 부과한 것으로 본다)한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6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2]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금		비 고
	사 용 량(톤)	금 액(원)	
가 정 용	1 - 10	230	
	11 - 20	260	
	21 - 30	290	
	31 - 40	330	
	41 - 50	360	
	51 이상	390	
일 반 용	1 - 30	280	
	31 - 50	330	
	51 - 100	390	
	101 - 300	480	
	301 - 500	600	
	501 이상	720	
대 중 탕 용	1 - 200	260	
	201 - 300	280	
	301 - 500	330	
	501 이상	370	
산 업 용	단일종량제	33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3]

##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2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해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 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 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6조제1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5]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	처리	계
ℓ 당	11.5	2.3	13.8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	처리	계
ℓ 당	15	2.3	17.3

※ “수집·운반” 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6]

##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제21조제2항)

구분	감 면 비 율			
	신축	증축	용도변경	양성화
업종				
기 초 생 활 수 급 권 자	50%	50%	50%	100%
재 난 지 역 대 상 자	100%	-	50%	100%

주) 감면비율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이 20백만원이고 감면비율이 50%인 경우 최종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액은 ?
  - =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20백만원)-감면액(20백만원 × 50%=10백만원)
  - = 10백만원 (최종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액)